

가톨릭대학교 프란치스코관 인사서약서

내용	
취사 및 통금	본인은 보호자에게 기숙사 내 취사가 가능하며 정해진 통금시간은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전달하여, 보호자가 해당 내용을 인지하였음을 전제로 서약함
벌점 제도	기숙사 내 흡연 및 음주, 외부인 출입, 소란 및 소음, 기숙사 내 반입금지 물품 반입, 공동생활을 어지럽히는 행위 등 적발 시 벌점 부여 (※벌점기준표 참고)
청소	- 기숙사는 쾌적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 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청소 점검을 진행 - 월 1회 청소점검 진행 시, 사전 공지한 시간에 기숙사 사감이 입실하여 호실 상태 점검 - 청소 상태 불량으로 "불합격"을 받은 경우 재점검을 진행
시설물 파손	-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기물 등의 파손, 훼손 등은 본인이 변상함 - 파손, 훼손 발생 시 기숙사운영사무실에 연락하여 별도 안내에 따름 - 본인 임의로 유사 제품 구매 및 수리 불가 - 시설보증금은 시설 등의 손상이나 훼손 발생시, 변상비용 차감 후 차액 환급 - 시설물 고장 시, 기숙사운영사무실에 즉시 보수 신청 진행해야 함 - 시설물 고장 방치로 인한 2차 문제 발생 시 부주의에 따른 발생 비용은 입주자 본인이 변상해야 함(누수, 변색, 파손 등) - 시설점검 직원 및 A/S 업체 방문 시 적극 협조해야 함 - 임의로 수리 진행 후 비용 납부한 경우, 환급 불가함
방 배정	- 입사 신청 시 신청서 도착순 기준으로 방 배정 (호실 임의 배정, 남녀 층 구분) - 호실 변경, 호실 비밀번호 공유 등 적발 시 강제 퇴사 조치
수도 광열비	- 매월 각 호실별 가스/전기/수도 사용량 및 고지서 청구내역 기숙사 게시판 공지 - 월별 사용량 평균 대비 40% 초과 시 보증금 차감 후 환급
시설 보증금 환불	- 퇴사 전 퇴실점검표를 통해 기숙사 사감 확인을 거쳐 확인 진행 후 보증금 환불 - 시설 보증금을 초과하는 시설물 및 기물 변상 내용 발생 시 별도의 복구 비용이 청구됨
입·퇴사 점검	입·퇴사 시 기숙사 사감과 동행하여 시설점검표 확인 절차 진행
중도 퇴사	- 학기 중 학적 상태 변동(휴학/자퇴/제적 등) 및 강제 퇴사 시, 중도 퇴사 처리 - 중도 퇴사 시 기숙사비 환불 불가(단, 시설보증금 환불)

본인은 가톨릭대학교 프란치스코관에 거주하는 학생으로서 위의 규정을 모두 읽고 충분히 숙지하였으며
거주 기간 동안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2024년 4월 일

학번 :

성명 : (서명)



 가톨릭대학교 기숙사운영팀 귀하

※ 벌점기준표

벌점 항목	벌점
· 벌점 15점 이상	강제 퇴사 - 7일 이내 퇴사 - 재학 중 입사 불허
· 기숙사 내 흡연 및 흡연의 흔적 등이 확인된 경우 (건물 전체 금연 건물)	
· 기숙사 내 음주 및 주류 반입하는 경우	
· 기숙사 내 반입금지 물품을 반입 또는 사용하는 행위 - 개인 전열기구(전기장판, 다리미 등), 화재위험 물질(휴대용 버너, 성냥, 뜸, 향, 초 등)	
· 외부인(기숙사 해당학기 미등록자) 동반 출입 및 이성 간 기숙사 출입	
· 타인 호실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	
·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	
· 호실 및 호실 비밀번호 공유, 호실 임의 변경	
· 기숙사 내 도박, 마약, 폭행하는 행위	
· 공동생활을 어지럽히는 행위(쓰레기 무단투기, 절도 등)	
· 학칙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은 자,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	
· 소란,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 (음악, 게임, 고성, 폭언, 욕설, 만취소란 등) *기숙사 절대 정숙 시간 : 00시~06시	10
· 기숙사 내 기물 및 시설물을 고의로 파손하는 행위를 한 자	
· 애완동물 반입 및 사육	
· 변기, 세면대, 하수구 등에 이물질(물티슈, 음식 등)을 넣어 막히게 한 행위	7
· 기숙사 내 무단으로 부착물(못, 선반 설치, 스티커 등)을 부착하는 행위	
· 기숙사 직원의 정당한 지도에 합당한 이유 없이 불응 및 불손한 언행	
· 호실 비품을 외부로 반출한 경우	
· 매트리스 커버 미사용 및 호실 내 신발 착용하는 경우	3
· 타 호실 방문 시 다른 룸메이트에게 방해로 주는 행위(음식물 섭취, 소음 등)	
· 기숙사 입·퇴사 시간을 미준수하는 경우	
· 청소 점호 미참여	
· 복도 및 공용구역에 개인물품(캐리어, 박스, 우산, 신발, 건조대 등) 및 호실 물품(소화기 등)을 비치하거나 방치하는 행위	2
· 기타 공동생활을 하는데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판단하는 경우	

※ 누적된 벌점은 당해 학기에 한하며, 강제 퇴사자는 재학 중 입사 불허

※ 시설 등의 손상이나 훼손 발송 시, 시설보증금에서 변상 비용 차감 후 차액 환급

※ 위 규정에 없는 사항 중 징계가 필요한 특수한 경우 기숙사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